

세무학회지
제14권 제1호 2013년 2월 pp.63~92
한국세무학회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에 관한 연구

오 윤* · 임동원**

<요 약>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12년이 되어 가고 있다.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실물소득보다는 금융소득이 세수조달창구로서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실물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상 달리할 점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과 제도가 있다. 현재 우리는 금융소득과세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우리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의 도출이 될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범주의 설정은 실질적 형평의 제고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과거 부부단위 합산으로 종합과세의 인적 범주를 설정하던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낮추려 한다면 단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천만원으로 낮춘다면 종합과세대상 납세자는 소폭 증가하면서 적지 않은 세수증가가 기대된다. 조금 길게는 종합과세의 물적 범주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도 소득과세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소득은 인적 귀속을 가리기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mobile income이라고 한다. 이런 특성을 중시하는 것이 최근 주요 국가들의 제도적 움직임이다. 우리의 형편상 그와 같은 움직임과 다소 다른 방향으로 가려한다면 그 지향성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질적 형평의 관점에서 현행 금융소득과세제도가 가지는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비교과세제도로 금융소득을 다른 종류의 소득에 비해 중과하는 점, 금융소득의 규모만으로 종합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점 및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본손익의 통산범위를 제한하는 점은 수평적 형평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낮은 금융소득자들에게 분리과세만 인정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배당세액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자소득의 규모를 고려하는 것은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한다. 이런 점들에 대한 제도개선은 우리의 납세의식 및 행정여건을 보아가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원적소득세제, 조세형평성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ohyoony@hanyang.ac.kr, 02-2220-2777, 주저자

**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fresh911@hanmail.net, 010-7722-3974, 교신저자

I. 서 론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소득과 부의 계층별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그간 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사회정책 및 환경정책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의 안정적인 건전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의 건전성을 지킬 필요도 상존하고 있다.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개혁은 우리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상으로도 그 수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1995년 도입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다소의 제도변경이 있어 왔지만 그 큰 틀에는 변함이 없는 현실이다. 차제에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현황, 여타 소득과의 세부담 비교 및 세수효과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의 선행연구로는 오윤·박훈·최원석, “금융소득 및 자본소득 세제 개편방안”(세무와 회계저널, Vol.7 No.3, 2006), 국중호·한상국, “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세무학연구, Vol.23 No.3, 2006), 김선구·박성배, “세제전문가의 금융소득세제 공평성 인식에 관한 연구”(세무와 회계저널, Vol.8 No.2, 2007) 등이 있다. 오윤 등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양도차익과세 및 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한 과세의 타당성을 주로 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중호 등은 일본에서의 이원적 소득세제적인 제도의 변화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김선구 등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4천만원 이하자에 대한 분리과세가 수직적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조세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현행 기준금액인 4천만원¹⁾의 적정성을 주로 형평성과 실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연혁과 현행 제도를, 제Ⅲ장에서는 주요 외국에서의 금융소득에 대한 최근 세제동향을 비교·검토한다. 제Ⅳ장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실효성, 형평성, 중립성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Ⅱ.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

1. ‘금융소득’의 개념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금융자산’은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및 계약상 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로부터의 소득은 보유시 받

1)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1611호, 2013.1.1.)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인하되었음.

생하는 것과 처분시 발생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유시에는 주식으로부터는 배당, 채권으로부터는 이자가 발생한다. 처분시에는 모두 자본이득(capital gain) - 우리 소득세법상의 표현을 빌리면 ‘양도소득’ - 이 발생한다.

‘금융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상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는 1994.12. 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부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거처럼 원천징수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때, 그 제도를 실무계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라고 부르게 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위의 관행적 개념인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총소득을 산정한 뒤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²⁾

2. 우리나라 제도

가. 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1949년 소득세법(1949.7.15. 법률 제33호)이 제정되면서 법인세가 소득세로부터 분리되었다.³⁾ 1949년 소득세법 이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단일세율로 세율로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되어 왔다.

1996년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1994.12.22. 법률 제4803호). 즉, 부부(거주자와 그 배우자)⁴⁾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규모에 따라 1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적용하던 20%의 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일률적으로 15%의 소득세만 내도록 하였다.

2) 헌법재판소 1999.11.25. 98헌마55 전원재판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위헌 확인).

3) 1934년 조선총독부 내 세제조사위원회의 세제개혁안을 바탕으로 일반소득세가 도입되었다. 이때 1종은 법인소득, 2종은 원천과세대상인 이자·배당 등, 3종은 종합과세대상인 2종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 구분되었다. 해방 후 미군정에서는 종래의 소득세제가 그대로 실시되었다.

4) 한편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소득세법 제61조는 부부의 자산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선언되자(헌재 2002.8.29. 2001헌마82, 판례집 14-2, 170),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즉 부부가 아니라 ‘거주자’만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과세되게 되었다.

1997년말 우리나라의 경제가 금융위기를 맞게 되자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이 제정·시행된 1997.12.31. 금융소득분리과세 제도가 다시 도입되면서 원천징수세율도 15%에서 20%로 환원되었다(부칙 제12조).

2001년 소득의 종류·계층 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이자소득 등의 합계금액이 4천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원칙적으로 15%로 다시 조정되었고, 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14%로 더욱 하향 조정되었다.

나. 현행 제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1인당 연간 합계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⁵⁾에는 합산과세된다. 4천만 원을 넘는 조건으로 종합과세되므로 일종의 조건부 종합과세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하게 된다.⁶⁾

종합과세 결과 분리과세 경우보다 적은 세액을 부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비교과세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는데,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의 ①, ② 중 큰 것을 세액으로 한다. 이는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종합과세 미적용(분리과세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것이다.

① $(4\text{천만 원} \times 14\%) + (4\text{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 \text{여타종합소득금액}) \times \text{기본세율}$ ⁷⁾

② $(\text{금융소득} \times 14\%^{8)}) + (\text{여타종합소득금액} \times \text{기본세율})$ ⁹⁾

종합과세되든 분리과세되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수입금액을 그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현행 세제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객관적 순소득금액원칙¹⁰⁾에 충실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은 다른 종류의 소득과 종합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면서 사업소득 등의 다른 소득의 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5) 배당세액공제액 가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제62조.

7) 소득세법 제62조 제1호.

8)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세율(예, 비영업대금 이자는 25%)로 원천징수한다.

9)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10) ‘객관적 순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종류별로 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매우 독특한 제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경우 주관적 순소득금액원칙¹¹⁾이 부분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동일한 종류의 소득에 대한 과세상 분류과세적인 요소와 종합과세적인 요소가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증가를 바로 순소득금액의 증가로 보고 있다. 객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이 작동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종합과세제도는 원래 수직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순소득금액을 담세력으로 보고 강제적으로 종합하도록 구성되는 것이다. 현행 세제는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보지 않는 바탕 위에 다른 것을 동일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의 관념에 충실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III. 주요 외국의 금융소득과세 제도

자본소득 또는 금융소득¹²⁾의 과세는 다른 소득과 종합하거나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분류하여 과세할 때 단일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금융소득을 이자, 배당, 자본이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Atkinson 2003, 504). 다수의 OECD 국가들이 금융소득과세에 있어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준 이원적소득세제(semi-dual income tax system)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단일세율로 기본공제를 제외한 모든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평률세(flat tax)의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금융소득에 대해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분리과세 제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부분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소득발생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경우(분리과세)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간의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도 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와 일본이 있으나 프랑스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한하여, 일본은 배당소득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독일은 특수한 경우¹³⁾에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리과세의 한도액을 4,000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각국의 사례에서는 이와 같이 한도액을 두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미국과 영국은 세율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11) ‘주관적 순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소득항목별 객관적 순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소득이 귀속되는 납세자의 소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관적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2) 자본소득은 금융소득에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추가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 모든 소득의 종합과세 소득률이 25% 이하인 금융소득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 구분에 대한 기준액을 두고 있을 뿐이다.

금융소득의 손익통산 범위에 있어서 독일은 모든 금융소득 간에 허용하고, 일본은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에, 영국과 프랑스는 자본이득 안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자본이득과 통상소득 간에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으나 한도액(3,000달러)이 있다.

〈표 1〉 각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비교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분리(분류) 과세대상	자본이득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2012년까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리(분류) 과세한도액	× 단, 35,000 파운드를 기준으로 세율 구분	× 단, 35,350달러 이하의 비과세 (2012년까지)	×	×	4,000만원
손익통산 범위	자본이득 간	통상소득과의 상계 허용 (총 3,000달러 한도)	금융소득 간 (단, 주식양도손실은 주식양도이익 간에만 가능)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이자소득은 제외)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가능 여부	×	×	× (단, 모든 소득의 종합과세 소득률이 25% 이하인 자는 종합과세 선택가능)	△ (배당소득만 가능)	×

1. 영국¹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금액에 따라 종합 및 분리과세를 혼용하고 있다.

2007년에는 자본이득 과세 분야에서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단행되었다. 먼저 3단계의 누진세율(10%, 20%, 40%) 체계에서 18% 단일세율 체제로의 개편이 이뤄졌으며, 그 대신 각종 공제 규정이 폐지되었다.¹⁵⁾ 2007년 세법개정으로 자본이득세법에서 소득세법 규정(세율 및 소득구간

14) HM Revenue & Customs, "A brief history of income tax", [http : //www.hmrc.gov.uk/history](http://www.hmrc.gov.uk/history). (2012.11.1. 방문)

15) 영국 정부가 2007년 세제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힌 것은 바로 개인의 자본이득 과세를 “단순화(simplication)”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8% 단일세율 체계가 도입되었으며, 자본이득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여러 가지 공제규정(즉, 체감공제, 물가연동공제, 절반공제)들이 폐지되었다.

규정)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폐지됐다. 다만, 2010년 6월 23일 이후에는 18%와 28%¹⁶⁾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영국의 현행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영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¹⁷⁾

상품구분		과세현황
채무증권의 이자소득		•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 종합과세 : - 2,560파운드 이하 : 10% - 2,560~35,000파운드 : 20% - 35,000~150,000파운드 : 40% - 150,000파운드 초과 :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채무 및 지분 증권	배당 소득	• 종합과세 : - 35,000파운드 이하 : 10%, - 35,000~150,000파운드 : 32.5%, - 150,000파운드 초과 : 4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본 이득	• 신고 분리과세 : - 35,000파운드 이하 : 18%, - 35,000파운드 초과 : 28%
우대혜택		비과세 한도 등
		토지 등의 양도이익과 합쳐 연간 10,600파운드 비과세
		자본손실과 자본이득 상계
		양도소득(주식, 투자신탁, 토지 등, 파생상품 등) 간의 상계만 허용
		이월 공제
		양도소득(주식, 토지 등)의 범위에서 무기한 이월
파생금융상품		• 파생상품거래 차익 역시 자본이득에 포함시켜 18%, 28%의 세율로 과세
집합투자증권		• 분배금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이자, 배당 소득으로 구분, 자본이득세 과세

영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초기에는 자본이득을 과세하지 않았으나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었다.¹⁸⁾ 2007년 이후 최근의 자본이득 과세는 소득세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자본이득 간의 손익 통산 및 무기한 이월을 허용해 주고 있으며,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18%와 28%의 두 개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금액에 따라 종합 및 분리과세를 혼용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16) 과세소득이 35,000 파운드 이상인 납세자[소득세율 40% 이상을 적용받는 납세자(Higher rate taxpayer)]와 신탁 또는 유산관리인은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17)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financial_securities (2012.11.1.방문).

18) 자본이득에 대해 다양한 공제규정을 두어 우대해 왔고, 소득세와 연계시키려는 노력도 시도하였다.

2. 미국¹⁹⁾

포괄주의 소득세제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경우, 금융소득을 세법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지 않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은 세법 전반에 산재해 있다.

미국은 금융소득 중 채무증권으로부터의 이자는 종합과세한다.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 중 단기자본이익은 종합과세하며, 지분증권으로부터의 배당소득과 장기자본이익은 분리과세한다. 미국은 증권거래세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Auerbach and Slemrod 1997, 589-590). 미국의 현행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미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²⁰⁾

상품구분		과세현황
채무증권의 이자소득		• 종합과세(10~35%) + 주 및 지방정부세금 ²¹⁾
채무 및 지분 증권	배당 소득	• 단계과세(연방) : 0, 15% + 종합과세(주 및 지방정부) • 35,350달러 이하 : 0%, 35,350달러 이상 : 15% (~2012년 한시조치)
	자본 이득	• 단계과세(연방) : 0, 15% + 종합과세 (주 및 지방정부) • 장기자본이익 35,350달러 이하 : 0%, 35,350달러 이상 : 15% (~2012년 한시조치) • 12개월 이하 보유시 종합과세(10~35%) + 주 및 지방정부세금
우대혜택		비과세 한도 등
		연간 \$3,000
		자본손실과 자본이익 상계
		허용, 통상소득과의 상계 허용(\$3,000 한도)
		이월 공제
		무기한 이월
파생금융상품		• 파생상품 손익은 자본이익으로서 매매목적 중 선물, 옵션 등의 손익은 60% 장기 손익, 40% 단기손익으로 처리
집합투자증권		• 뮤추얼펀드로부터의 분배금은 분배금의 성격에 따라 주주 단계에서 소득의 원천 에 따라 이자, 배당, 자본이익으로 구분되어 과세 • 파트너십으로부터의 분배금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

미국의 금융소득에 대한 특징은 원칙 종합과세이면서 분리과세를 병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소득분배 목적을 위한 공평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많은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장기자본소득에 대한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

19) US Treasury, "The History of the US Tax System", www.treas.gov, 2012.11.1. 방문.

20)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financial_securities/risi02.htm(2012.11.1.방문).

21) 주 지방 정부 세금은 관세 등은 각각 다르다. 뉴욕시의 경우 주세 : 4~8.97%, 시세 2.55~3.4% + 세액의 14% 부가세를 부과한다.

고 있다. 즉, 증권의 단기양도소득은 종합과세하고, 1년 이상 장기양도소득은 분리과세하고 있다. 또한 자본소득간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3. 독일

가. 2008년 개혁 전

금융소득 과세는 2008년 개정 전까지 다음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이자와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하고, 원천징수액의 5.5%를 연대세(solidarity surcharge)로 부과하였다. 하지만 배당의 경우 법인세 과세 이후 배당소득의 절반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절반만이 종합과세대상이 되었다.

개인용 자산의 자본이득은 특정 기간 내에 처분한 자산(단기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우선 비례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후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 한계세율로 과세하였다. 특히, 주식의 경우 지분을 1% 미만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비과세하였다.²²⁾

나. 2008년 개혁 이후

최근 들어서 조세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기 위한 논의들이 다양하게 제안되었고, (Christoph and Wolfgang 2004, 15) 2008년에 2003년 독일경제자문가회의의 제안이 토대가 되어 (OECD 2006, 113) 독일에 이원적 소득세제(Abgeltungsteuer)가 도입되었다.²³⁾ 새로 도입된 제도에 의하면 2009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5%의 단일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즉, 금융소득은 단일세율로 원천분리과세되고 종합과세대상으로 합산하지 않게 되었다(독일 소득세법 제32d조). 일반 소득에 대한 세율은 16~45%로 설정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북유럽의 국가들이 시행하는 이원적 소득세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²⁴⁾

세제의 개정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이 금융소득(자본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신고불요)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자본소득’의 개념을 창설했다(독일 소득세법 제20조). 분

22) 지분을 1% 이상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와 최근 5년 이내의 어느 시점에 1%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과세하였다.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도 배당소득 과세와 동일하게 half-income system을 적용하여 자본이득 중 50%만을 과세하였다.

23) 독일이 이러한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소득에 대한 구분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정책적으로는 투자와 자본축적, GDP, 그리고 가계소비의 증가를 위한 것이다. 특히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외로의 자본이탈 방지와 금융소득세제의 단순화이다(Bird and Zolt 2010, 206-210 ; Wolfgang and Rolf 2007, 837).

24)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으로 평균적인 노동 공급이 증가하였고,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감소로 1.1%의 노동 수요도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원적 소득세제는 수요 중심의 증가추세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Gerhard 2011, 9).

리과세의 경우 소득세율은 25%와 연대부가세가 소득세의 5.5% 부과되어, 총 26.375%이다. 다만,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의 합계가 종합과세의 소득세 세율의 25% 이하인 자(소득금액 약 2천만원 수준)는 종합과세의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신고하여야 한다.²⁵⁾

금융소득은 실제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신 총액 801유로까지 공제해준다. 주식의 양도손실은 주식의 양도이익과의 통산만 가능하다. 하지만 기타 자본이득(환차손 등)은 이자, 배당, 기타 자본이득과 통산이 가능하므로, 금융소득 간 통산이 가능하다.

독일의 현행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 독일의 금융소득 과세제도²⁶⁾

소득구분		과세현황
채무증권의 이자소득		• 분리과세 : 25%(연대부가세 5.5% 별도) = 26.375%
채무 및 지분 증권	배당 소득	• 분리과세 : 25%(연대부가세 5.5% 별도) = 26.375% • 법인세 납부 후 분배된 소득에 대해 40% 비과세 적용
	자본 이득	• 분리과세 : 25%(연대부가세 5.5% 별도) = 26.375% • 기업지분 양도소득에 40% 비과세
우대혜택	비과세 한도 등	저축자 일괄공제(이자·배당소득을 포함하여 금융소득에 대해서 저축자 일괄 공제를 적용, 총 801유로 공제)
	자본손실과 자본이득 상계	금융소득 간 상계 가능 : 투자신탁의 손실, 채권의 손실, 파생상품의 손실, 예금의 pay-off 손실, 환차손 등
	이월 공제	금융소득의 범위에서 무기한 이월
파생금융상품		• 분리과세 : 25%(연대부가세 5.5% 별도) = 26.375%

독일은 금융소득에 대해 과거에는 원천징수를 통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병행해 왔다. 그러나 2009년부터 금융소득은 단일세율로 원천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다. 비과세한도를 책정하고 있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25) 신고를 한 결과 종합과세를 선택한 납세자가 오히려 불리한 경우에는 세무당국은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26.375%의 원천징수세금만 과세한다.

26)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financial_securities/\(2012.11.2.방문\)](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financial_securities/(2012.11.2.방문)).

4. 일본

가. 2008년 개혁 전²⁷⁾

일본은 1947년 미군정의 샤우프권고²⁸⁾에 따라 이자, 배당, 주식양도이익 등 금융소득에 대해 모두 종합과세하였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었고(石弘光 1993, 41-41), 1953년부터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도입하였다.

이자소득은 20% 원천분리과세를 적용하였다. 배당소득은 연간 배당금액 50만엔 미만의 경우 원천분리(20%) 선택과세제도와 연간 배당금액 5만엔 이하의 경우 신고가 불필요한 원천분리과세(10%) 제도를 적용하였다(金子宏 2008, 199).

증권양도소득은 비과세해오다가 1989년 4월 원칙과세로 바뀌었으며, 신고분리과세(20%)를 선택할 수 있었다. 1999년 유가증권 거래세를 폐지하였다.²⁹⁾

나. 2008년 개혁 이후

2004년 6월에 일본정부세제조사회의 금융소위원회는 “금융소득과세 일체화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소득과세의 일체화를 제안하였다.³⁰⁾ 금융소득과세의 일체화는 일반 투자자가 투자하기 쉬운 간소하고 중립적인 세제 구현을 위해 기존의 분리과세 제도를 재구축 하는 것이다.

2008년 세제개정시 금융소득과세의 일체화가 반영되어 2009년부터는 이자, 배당, 자본이득 모두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³¹⁾ 다만, 금융소득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기존의 소득 구분을

27) 日本 財務省, “利子・配当・株式譲渡益課税の沿革”, <http://www.mof.go.jp>, 2012.11.2. 방문.

28) 샤우프세제권고(Report on Japanese Taxation by Shoup Mission)는 1949년 5월에 단장인 C. Shoup 단장과 미국의 재정 및 조세전문가인 S. Surry, W. Wickrey 등 7명의 조세사절단 일본을 방문하여 만든 세제개혁 보고서이다(大藏省財政史室 1977).

29) 그 배경은 유통세제가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 및 유통과정에서 경제주체의 행동을 왜곡시켜 비효율을 초래하고 과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0) <http://www.cao.go.jp/zeicho/tosin/>, 2012.11.2. 방문; 그 이유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이 하락되고, 가계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주식 및 증권 투자 신탁의 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가계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저축에서 투자로”의 정책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31)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

- ① 예적금의 이자 등
- ② 대주주 이외의 상장주식의 배당금, 공모주식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이전 : 종합과세)
- ③ 할인채의 양도소득(이전 : 종합과세)
- ④ 파생금융상품의 소득(이전 : 종합과세의 잡소득)
- ⑤ 금융유사상품의 수익(이전 : 종합과세) : 금투자계좌의 이익, 외화투자계좌의 환차익 등
- ⑥ 외화예금의 환차익(이전 : 종합과세의 잡소득)

적용하고 있다.

금융소득과세 일체화의 주요 내용 중 다른 하나는 손익 통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³²⁾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정책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주식양도손실과의 손익통산 인정범위에 이자소득도 포함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현행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 일본의 금융소득 과세제도³³⁾

상품구분		과세현황
채무증권의 이자소득		• 분리과세[소득세(원천징수) : 15%+지방세 : 5%] = 20%
채무 및 지분 증권	배당 소득	• 상장주식, 공모주식투자신탁 등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분리과세(신고불요) : 20% (10%, ~2013.12.) – 종합과세 : 소득세 5~40 + 주민세 10% – 발행주식 중 3%이상을 보유한 자는 제외(대주주 제외) • 이외의 주식 : 종합과세(소득세 5~40 + 주민세 10%)
	자본 이득	• 신고분리과세 : 20%(소득세 : 15% + 개인주민세 : 5%) • 채권양도차익은 비과세
우대혜택		비과세 한도 등
		비과세구좌 내 소액상장주식등에 관계된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은 비과세 : 3년간 총 300만엔(~2014년)
		자본손실과 자본이득 상계 허용. 다만, 이자소득과의 상계는 불허
		이월 공제
		이월 3년
파생금융상품		• 신고분리과세 : 20%(소득세 : 15% + 개인주민세 : 5%) – 장내파생상품의 경우임, 장외파생상품은 종합과세
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의 분배금은 투자대상이 채권(공사채)인 경우 이자소득, 기타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 • 투자회사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처분이득은 자본이득으로 과세

⑦ 금융소득 유사보험 수입(이전 : 종합과세)

32) 손익 통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주식양도손익과 공사채양도손익 : 둘다 유가증권양도손익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상장주식의 배당과 양도손실, 공모주투신의 수익분배금과 양도손실 : 두 가지가 위험자산인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는 관련성이 강하고,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 통산을 인정한다.

33)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financial_securities/index.htm(2012.11.2.방문).

일본은 전후부터 소득세에 대해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금융소득 과세도 종합과세에서 출발하였으나, 다양한 정책적 고려로 인하여 분리과세로 정착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2009년 “금융소득과세 일체화” 이후 금융소득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분리과세로 정착하였다. 이자·배당·양도차익·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의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성격의 자본소득 간에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10년간의 전환기를 거쳐 폐지되었다.

IV. 개선방안 도출

1. 현행제도 분석

가. 준이원적 소득세제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과세제도는 이원적 소득세제에서와 같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하는 일원적 과세의 영역을 병존시키고 있다. 금융소득과세를 다른 종류 소득과세와 차등을 둔다는 점에서 이원적이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 소득과세와 동일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원적인 과세와 일원적인 과세를 병행하는 혼성적 hybrid이기 때문에 이를 ‘준이원적 소득세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 이원적 소득세제와의 공통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한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그 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을 넘지 않는 한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따라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상 단일세율(내지 복수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하고,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세제와 공통점을 지니는 것이다.

(2) 이원적 소득세제와의 차이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분리과세를 하는 부분은 외양상 이원적소득세제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우리의 세제는 동일한 종류의 소득임에도 그 금융소득의 금액이 많을 경우 종합과세하도록 하여 일원적인 과세의 영역을 두고 있으며, 양도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다른 원리에 따라 과세하고 있는 등 이원적 소득세제와는 상이한 점을 다수 가지고 있다.

(가) 일원적 과세영역의 설정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류의 소득과 종합과세되며, 이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나) 자본소득의 범주

일반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 국가에서 자본소득의 범주에는 금융자산자본이득이 포함되어 동일하게 과세되는데 반하여, 우리의 세제상으로는 금융자산자본이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구분되어 과세된다.

이는 우리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에 의한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기 보다는 과거 징세행정상의 집행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류소득과세제도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 과세소득금액 산정

원천징수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보아 순소득금액원칙을 배제하고 있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보는 한편 소득귀속자 개인의 인적비용을 공제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을 배제하면서 주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 달성에 논리적 모순을 노정하는 것이다. 과거 금융소득수입금액 귀속파악이 어려웠던 시절의 원천징수분리과세에서 이제 금융실명제로 금융소득수입금액 귀속파악이 가능해졌다면 금융비용귀속도 파악이 가능해졌으므로 객관적 순소득금액기준을 적용할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원천징수세율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 국가에서의 자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소득에 대한 누진세율구조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에 해당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누진세율구조 중 아래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세율에 근사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³⁴⁾

이는 우리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생애지출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중과세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세율과 비교하여 정부의 세수형편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34) 이 점에서 최근 이원적 소득세제적인 제도 전환을 한 독일 및 일본과 유사하다.

나. 실효성 측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개인에 귀속하는 전체금융소득 중 약 12~22%의 금액이 종합과세신고 되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영향으로 매년 약 3천억~6천억원의 세수증가가 있었다.

〈표 6〉 과세단위 변경 전후 과세현황(조원)

	부부합산시기		개인단위합산시기			97~04
	1997	2001	2002	2003	2004	
이자원천징수	3.52	2.94	1.95	1.67	1.60	27.58
지급신고액	30.93	31.70	22.22	16.69	15.67	244.11
실효세율	11.4%	9.3%	8.8%	9.8%	10.2%	11.3%
배당원천징수	0.23	0.49	0.54	0.67	0.62	3.85
지급신고액	1.71	4.98	5.32	6.95	6.69	33.76
실효세율	13.7%	9.9%	10.1%	9.6%	9.3%	11.4%
원천징수금융소득(A)	32.64	36.68	27.54	23.64	22.36	
종소신고금융소득(B)	5.58	6.27	3.46	4.20	4.95	
종합신고비율(B/A)	17.1%	17.1%	12.6%	17.8%	22.1%	
종소신고추가납부세액	0.45	0.62	0.29	0.34	0.42	
전체개인금융소득실효세율	12.9%	11.0%	11.3%	11.8%	11.8%	11.9%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1997년 처음 도입될 때 부부단위 합산을 기본원칙으로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이었으나, 2002년에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개인별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 점은 별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표에서 종합신고의 비율은 부부합산시기에 비해 개인단위합산시기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³⁵⁾

2006년 이후의 과세연도기간만 비교하여 볼 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및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규모는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금융시장의 향배에 따라 변동되어 일정 지향점을 찾기 어렵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규모는 47,071명(2003), 23,986명(2004), 24,561명(2005), 35,924명(2006), 61,475명(2007), 49,409명(2008), 51,261명(2009), 48,907명(2010년)으로 변화하여 왔다.

35) 실제 부부합산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여부가 판단되었던 시점은 1997년과 2001년에 불과하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금융소득이 모두 분리과세되었다(오윤 외 2006).

〈표 7〉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신고인원	소득금액 계	1인당평균	금융소득금액	1인당평균	금융소득비중
2006년	35,924	11,314,646	314.961	6,860,072	190.961	0.61
2007년	61,475	16,272,342	264.699	9,738,833	158.419	0.60
2008년	49,409	15,640,060	316.543	8,968,461	181.515	0.57
2009년	51,261	15,551,900	303.387	8,793,377	171.541	0.57
2010년	48,907	17,313,695	354.013	9,852,702	201.458	0.57

종합과세로 인해 추가적으로 납부되는 세액은 전체 신고금융소득의 약 7% 수준에 해당한다는 오운 등(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종합소득합산과세제도의 영향으로 2006년에는 0.48조원, 2007년에는 0.67조원, 2008년에는 0.63조원, 2009년에는 0.62조원 그리고 2010년에는 0.69조원의 세수증가가 있었다.³⁶⁾

2010년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 신고소득금액은 3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인별금융소득의 비중은 약 60%를 전후한 수준이다.

〈표 8〉 금융소득규모별 종합소득신고현황(2010년 귀속)

(단위 : 명, 백만원)

	신고인원	종합소득 금액계	평균 소득금액	추정평균 실효세율	금융 소득금액	다른 소득금액
금융소득규모별	48,907	17,313,695	354		9,852,702	7,460,993
4천만 이하 ³⁷⁾	683	82,517	121	0.1595	3,535	78,982
4.6천만 이하	7,674	893,084	116	0.1540	328,725	564,359
6천만 이하	10,775	1,487,990	138	0.1770	562,324	925,666
8천만 이하	8,252	1,391,822	169	0.1925	567,936	823,886
8.8천만 이하	2,211	430,346	195	0.2055	185,582	244,764
1억 이하	2,472	539,932	218	0.2170	231,981	307,951
2억 이하	8,903	2,656,573	298	0.2434	1,227,068	1,429,505
3억 이하	2,863	1,310,854	458	0.2641	696,912	613,942
5억 이하	2,161	1,479,654	685	0.2760	826,204	653,450
5억 초과	2,913	7,040,923	2,417	0.2850	5,222,435	1,818,488

36) 소득계급별 실효세율에 대한 정밀분석을 한다면 이보다 다소 많은 수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 형평성 문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의하면 실질적 담세력에 부합하는 응능부담원칙이 세법에 구현되어야 한다. 소득과세상 실질적 담세력은 순소득금액에 의해 표창된다. 순소득금액은 객관적 순소득금액과 주관적 순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객관적 순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종류별로 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주관적 순소득금액’이라 함은 위와 같이 계산된 각 소득항목별 객관적 순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소득이 귀속되는 납세자의 소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관적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자연인이 창출하는 소득은 그 자연인의 신체와 정신의 유지 및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에 관련된 비용은 간접적으로 개별 소득항목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전자를 ‘객관적 순소득금액과세원칙(objektive Netto Prinzip)’이라고 하고, 후자를 ‘주관적 순소득금액과세원칙(subjektive Netto Prinzip)’이라고 한다(Klaus and Joachim 2005, 247).

(1) 수평적 형평

(가) 금융소득에 대한 높은 실효세율

오윤 등(2006)에 의하면 국민소득통계 중 해당 영역의 소득을 분모로 하고 실제 부과된 세액을 분자로 하는 방식으로 소득영역별 실효세율을 계산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 14%에 불구하고 11.3% 전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비과세감면되는 부분 때문이다. 이는 근로소득 2.8%³⁷⁾ 및 개인사업소득 11.9% 및 법인사업소득 23.2%(배당소득세액부담 고려)의 실효세율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동 연구에 의하면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종합과세로 인해 추가적으로 납부되는 세액은 전체신고금융소득의 약 7% 수준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종합과세를 받는 자는 평균적으로 보아 21%를 전후한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³⁹⁾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귀속분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들의 평균실효세율은 약 16~29% 수준이다. 일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및 금융소득분리과세 대상자의 실효세율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금융소득을 추가적으로 종합합산하게 됨에 따라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37) 4,000만원 이하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으로서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다.

38) 2011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은 2007년(귀속분 기준) 12.6%에서 2008년 12.0%, 2009년 10.6% 등으로 하락했다. 이 때 실효세율은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했을 때 납세자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세율로 과세표준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39)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실효세율을 14%로 보는 전제 위에 있다.

한계세율은 24% 또는 35%가 된다.⁴⁰⁾

〈표 9〉 금융소득규모별 적용세율분석(2010년 귀속)

(단위 : 명, 백만원)

금융소득 규모별	평균 소득금액	평균 금융소득금액	평균 다른 소득금액	금융소득 적용세율	추정평균 실효세율
종합	354	201	153		
4천만 이하	121	5	116		0.16
4.6천만 이하	116	43	74	0.24/0.35	0.15
6천만 이하	138	52	86	0.24/0.35	0.18
8천만 이하	169	69	100	0.24/0.35	0.19
8.8천만 이하	195	84	111	0.35	0.21
1억 이하	218	94	125	0.35	0.22
2억 이하	298	138	161	0.35	0.24
3억 이하	458	243	214	0.35	0.26
5억 이하	685	382	302	0.35	0.28
5억 초과	2,417	1,793	624	0.35	0.29

위 표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평균인을 상정하고 그의 금융소득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4천만원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14%⁴¹⁾, 4천만원을 초과하고 8천만원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24% 또는 35%, 8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나) ‘객관적 순소득금액과세원칙’ 적용 배제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그것이 원천징수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되어 과세되는 모두 수익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즉 객관적 순소득금액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이 단일세율과세되는 경우이든 누진세율과세되는 경우이든 과세대상소

40) 신고소득자 중 금융소득의 규모가 8천만원 이하인 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할 경우 합산되는 금융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2010년중 전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48,907명 중 27,384명으로 약 56%를 차지한다. 나머지 44%의 상위소득자의 경우에는 합산되는 금융소득에 대해 모두 35%의 최고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41)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비교과세방식에 의해 최초 4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14%의 부담이 주어지도록 하고 있다.

득금액을 순소득금액이 아닌 수입금액으로 함으로써 담세력에 부합하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 국가에서 자본소득에 대해 단일세율(또는 복수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득금액의 계산에는 필요경비 및 손실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적용세율은 원천징수 때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객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본소득 필요경비 및 손실을 신고하더라도 그것만에 의해서는 개인적인 경비 등을 반영할 수는 없다. 즉 주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노동소득의 신고시에만 반영된다. 노동소득의 창출에는 인신의 유지·관리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측면에서 이원적소득세제의 노동소득에 대한 주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은 ‘객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소득세법상 규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이자소득에 있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의 성질, 그 비용을 공제할 필요성의 정도, 조세관계의 간명성과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기술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비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⁴²⁾ 이에 대해 동 조항은 원본의 잠식을 가져오는 과세라는 점에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하여 이자소득자를 다른 소득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다수의견은 ‘차별’, 즉 형평의 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되, 그것이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주로 징세행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는 오늘날 기술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며, 납세자에 소요되는 비용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종합과세받고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징세의 효율성’은 각 납세자로 하여금 관련되는 필요경비를 파악하여 순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과 그것의 진실성을 조사하는 작업의 효율성을 말한다. 금융실명법 운영상 사실상 차명이 허용되는 현행 법제만 볼 때에는 금융비용의 실질에 부합하는 귀속의 판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조항 등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제조항이 있으므로 이의 실현이 어렵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미국이나 북유럽국가의 경우 이를 제도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금융비용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특히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는 것이 강제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소득은 객관적인 순소득금액원칙이 지켜지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이 계산되도록 하는 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평적 형평의 관점에서 보면 흠결이 있는 부분이다.

42) 헌법재판소 2001.12.20. 선고. 2000헌바54 전원재판부 판결.

(2) 수직적 형평

(가) 분리과세대상자에 대해 ‘주관적 순소득금액과세원칙’ 적용 배제

종합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 순소득금액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관적 순소득금액과세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 종합과세에 의한 납세자의 이익에 비해 그에 따른 행정적 부담과 조세징수비용의 증가 및 금융권의 혼란을 감안한 국회의 입법재량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⁴³⁾

과세실제를 보면 다른 종류의 소득과세상 실효세율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명목세율 및 실효세율을 비교할 때 금융소득자가 비교적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중한 과세에 따른 법익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반대쪽 법익으로는 행정적인 편의성 및 금융시장의 혼란방지가 있다.

(나) 종합과세대상 판단시 종합적 담세능력 고려 배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을 설정하는 데 있어 오로지 금융소득의 규모만 고려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규모의 금융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소득의 규모에 불구하고 14% 이상의 세금부담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⁴⁴⁾ 이는 종합적인 소득의 규모가 진정한 담세력이므로 그에 따라 실질적인 세부담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흠결이 있는 부분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판단시 상당한 공통점이 있음에도 여전히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그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른 종류의 소득의 금액은 왜 고려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궁색하게 한다.

라. 중립성 문제

우리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식의 설정상 동일성을 강조하는 입법태도를 견지하여 왔다.

1996년 실시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전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모두에 대해 그 수입금액의 일정율의 세액을 원천징수 분리과세하여 왔다. 현재도 그 기틀은 유지되면서 인별 연간 두 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을 넘는 자는 두 소득의 합계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과세상 여전히 동일한 취급을 받고

43) 헌법재판소 2006.11.30. 선고. 2006헌마489 전원재판부 판결.

44) 갑은 금융소득 5천만원만 있고 을은 금융소득 5천만원과 근로소득 5천만원이 있는 경우 갑이 을과 동일하게 14% 이상의 세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있는지 형평의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갑이 8천만원의 금융소득이 있어 종합과세되는 한편, 을은 금융소득 3천만원과 근로소득 5천만원이 발생하여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분리과세되는 경우를 비교할 수 있다.

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는 자에 한해 약 2분의 1에 해당하는 배당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2010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배당세액공제를 받은 자는 7,822명이고 배당세액공제액은 2,981억원에 이른다. 관련 배당소득금액은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 귀속분 배당소득 중 개인납세자에 귀속하는 것은 전체 33,801명으로서 배당소득금액 14조 4천억원에 이른다. 인원상으로는 23%, 금액상으로는 21%의 부분만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받고 있다. 경제적 이중과세는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부분이다.

이는 우리 소득세법이 이자와 배당이 법인과세와 관련하여 볼 때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조세부담 배분에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여야 하는 제도적 여건 하에 배당소득에 대해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의 조세부담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은 조세의 중립성에 배치되는 것이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든가 과세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이자소득이든 배당소득이든 몽땅그려 그 합계금액이 4천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배당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의 배제에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 현행 준이원적 과세방식 유지

현행의 금융소득과세체계는 소득의 귀속을 가리기 어려운 이동성이 높은 금융소득(mobile income)에 대해 기본적인 세율로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모든 납세자로 하여금 금융소득을 합산신고하는 데에 따르는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주요 국가가 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류과세를 하는 부분을 남겨 놓은 것은 이런 점을 특히 고려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북유럽국가의 이원적 소득세제는 그 주된 목적이 위와 같지는 않지만 이동성이 높은 금융소득이 자본의 국외이탈로 과세하기 어려운 특성도 있어 이를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과세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동기도 함께 작동하여 형성된 것이다. 2009년에는 독일에서는 자본소득의 개념이 신설되면서 자본소득에 대해 단일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를 하도록 한 것과 일본에서 금융소득일체화 차원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된 것은 이원적 소득세제의 변경이 점차 넓혀져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조세제도가 자본거래에 대해 매우 중립적으로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완납적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방식이 갖는 장점과 그것의 시대부합성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득이 불로소득으로서 중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정서가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⁴⁵⁾ 굳이 금융소득에 대해 중과하여야 한다는 인식보다도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비교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생애지출세적인 이론의 합리성에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금융소득을 일반소득과 같이 종합과세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금액의 소득은 종류에 불구하고 동일하게 과세한다는 의미에서 수평적 형평을 도모하는 길이며, 많은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수직적 형평을 도모하는 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형평성을 제고하는 길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생애지출세적인 관점에서 이중과세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의 금융소득과세제도는 hybrid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지만 효율성(효과성)과 형평성의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서 현실적인 방안임에는 분명하므로 그 기본적 틀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 개선방향

가. 실효성 측면 : 일원적 과세영역의 확대

자본축적이 고도화되는 한편, 중산층의 자산형성은 위축되어 사회적으로 부와 소득의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진정한 형평성을 도모하면서 재분배를 위한 재원을 조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1) 인적 확대

현행의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인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은 너무 적어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적게 함으로써 사회보장적 지출의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은 1997년 부부단위 합산과세를 전제로 도입된 기준이다. 당시 민간자본축적은 오늘날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었지만 이자율은 오늘날의 두 배의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실제 금융소득종합신고율 한 납세자의 수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2002년 귀속분부터 개인단위 금융소득종합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이후에도 그 수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금융소득규모를 기준으로 사회구성원을 일렬로 줄을 세울 때 그 비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시대나 시장상황의 변화를 이유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변경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 45) 다양한 세계문화를 돌아보면 이슬람국가에서는 이자를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각에서 보면 마치 대여자가 시장원리에 의해 받아야 할 이자소득에 대해 국가가 100%의 세율로 과세하고 이를 다시 차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제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을 낮출 경우 세금부담을 하게 될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와 그들로부터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수가 얼마나 될지를 추산한다면 더욱 분명한 것이 된다. 결론적으로 주로 세금부담을 하게 될 계층은 중산층이 되며 그들로부터의 세금징수액은 기존의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얻는 세수의 최대 1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산층의 붕괴를 우려하는 경제상황에서 중산층의 부담을 주어가면서 국고수입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3천만원으로 낮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3천만원으로 낮출 경우 주로 영향을 받게 될 계층은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연간소득금액이 8천만원~1억원 수준의 계층이 될 것이다. 그들의 현재 종합과세되고 있는 소득금액은 대체로 6천만원~8천만원인 계층이다. 해당 계층의 인원은 2010년 기준 약 56만명⁴⁶⁾에 이른다. 이들 중 일부가 금융소득에 대해 대개의 경우 24% 또는 35%의 한계세율로 과세될 것이다.⁴⁷⁾

3천만원으로 낮춤에 따라 추가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받는 자의 평균 금융소득을 3천5백만원으로 가정한다면 1인당 추가적인 연간 조세부담은 $1천5백만원 \times (30\% - 14\%) = 2백4십만원$ 수준이다.⁴⁸⁾

56만명 중 20%인 11만2천명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받는 것을 가정한다면⁴⁹⁾ 추가적인 세수는 2,690억원 가량된다.

(나) 2천만원으로 낮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을 3천만원에서 추가적으로 2천만원으로 낮출 경우 주로 영향을 받게 될 계층은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연간소득금액이 6천만원~8천만원 수준의 계층이 될 것이다. 그들의 현재 종합과세되고 있는 소득금액은 4천만원~6천만원인 계층이다. 해당 계층의 인원은 2010년 기준 약 137만명⁵⁰⁾에 이른다. 이들 중 일부가 금융소득에 대해 대개의 경우 24%의 한계세율로 과세될 것이다.

3천만원에서 추가적으로 2천만원으로 낮춤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받게 되는 자의 평균 금융소득을 2천5백만원으로 가정한다면 1인당 추가적인 조세부담은 $5백만원 \times (24\% - 14\%) =$

46) 2010년 귀속 소득세 종합소득신고자 11만명과 근로소득연말정산자 45만명.

47) 종합소득금액과 과세표준간 약 2천만원의 간극을 전제로 한 것이다.

48) 2천만원 부분은 14%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49) 2010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자 48,907명의 금융소득 이외 다른 소득의 평균소득금액은 153백만원이다. 이들 계층을 종합소득신고금액 1억원 이상자로 볼 경우 그 집단 전체의 종합소득신고자는 223천명이다. 약 22%의 신고자가 금융소득을 종합신고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래도 종합소득이 낮은 계층은 금융소득종합신고비율이 낮을 것이지만 약 20%로 가정하고 세수를 추계하여 본다.

50) 2010년 귀속 소득세 종합소득신고자 22만명과 근로소득연말정산자 115만명.

0.5백만원이 될 것이다.

137만명 중 10%인 13만7천명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받는 것을 가정한다면⁵¹⁾ 추가적인 세수는 685억원 가량된다. 연간금융소득이 3천만원 이상인 자로부터의 세수증가 2,690억원도 합산한다면 추가세수는 3,375억원 가량된다. 이는 그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었던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자로부터의 연간 종합신고에 따른 추가세수 약 6천억원~7천억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다) 소결론

결론적으로 주로 세금부담을 하게 될 계층은 중산층이 되며 그들로부터의 세금징수액은 기존의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얻는 세수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의 하향 조정은 세수 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우선 3천만원으로 낮춘다면 종합과세대상 납세자는 소폭 증가하면서 적지 않은 세수가 증가될 것이다.⁵²⁾ 납세자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세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물적 확대

장기적으로는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동질적 과세를 위해서는 금융자산양도차익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하여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양도차익을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납세자의 금융자산거래에 따른 손익이 통일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식의 특정구좌제도⁵³⁾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금융상품거래업자(금융기관)에 의해 특정계좌 내의 상장주식 관련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관리·원천징수되며, 특정구좌 내에서 발생한 상장주식의 양도손익과 배당소득은 통산가능하다.

51) 금융소득 3천만원 이상자의 경우의 절반인 10%로 가정하고 세수를 추계하여 본다.

52) 2천만원으로 낮추는 것보다 납세자는 반으로 줄고, 세수의 증가는 2천만원으로 낮추는 경우와 비교하여 79% 정도 수준이다.

53) 특정구좌제도는 그 계좌에 관해 금융상품거래업자가 상장주식 양도소득 계산이나 납세 관련 사무를 대행하여 간편신고나 원천징수로 납세절차를 종료하는 제도이다. 거주자 등이 금융상품거래업자(금융기관)에게 특정계좌를 개설한 경우에 그 특정계좌 내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특정계좌 외에 양도한 다른 주식양도소득과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또한 특정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37조의11의3부터 제37조의11의6).

나. 형평성(중립성) 보완

(1) 비교과세 폐지 및 선택적 종합과세 도입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금융소득을 종합합산신고하도록 하면서 4천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4% 또는 그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비교과세제도는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하는 자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금융소득이 적어 분리과세하는 자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으면 안된다는 수직적 형평의 관념에서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비교과세제도는 수평적 형평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점이 있다. 동일한 금액의 다른 종류의 소득에 비해 금융소득에 대해 차별적으로 중과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인적 공제 등 소득공제가 2천만원 있는 자에게 ① 금융소득만 7천만원 있는 경우와 ② 근로소득만 7천만원 있는 경우를 상정해보자. ‘①’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며, 980만원과 830만원의 비교세액 중 큰 것인 98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소득금액 대비 실효세율 14%). ‘②’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은 5천만원이며 산출세액은 678만원이 된다(소득금액 대비 실효세율 9.69%). 소득과세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비교과세제도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종합과세되는 자의 세부담이 분리과세되는 자의 세부담보다 적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할 수 있다.

비교과세제도의 수직적 형평 도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하는 자의 실효세율이 분리과세하는 자의 실효세율보다 높게 형성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종합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⁵⁴⁾ 금융소득만 있는 자들을 비교해보면, 금융소득만 1백만원인 자와 금융소득만 1억4천5백만원인(인적 공제 등 소득공제가 2천만원인 경우) 자와 실효세율이 동일하게 14%가 된다. 이는 수직적 형평의 차원에서 심대한 흠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소득 의무적 종합과세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배당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다만, 비교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적 종합과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행정 및 금융시장의 문제가 해소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제도 변경은 상황을 보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⁵⁵⁾ 다만, 행정적 부담은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에

54) 이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자는 부양가족공제를 하는 자의 소득에 합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5) 우리 헌법재판소가 저소득자에 대해 종합과세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들고 있는 행정 및 금융시장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보다 과세관청에 의한 금융정보의 접근이 제

다른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할 경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용금액자료 등이 각 개인별로 금융권으로부터 송부되어 오는 모바일 또는 인터넷 금융시대에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금융권에 혼란이 발생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2) 실질적 담세력을 기준으로 하는 종합과세대상자 선정기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인 담세력에 부합하는 과세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실질적 담세력은 금융소득만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기타의 소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금융소득이 1억원만 있는 자와 금융소득은 1천만원 있으면서 다른 소득이 9천만원 있는 자를 비교할 때 후자의 금융소득 1천만원에 대해 14% 이상의 세금부담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할 당위는 형평의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행 세법상으로도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금액에 따라 실질세금부담이 달라지는 것이다.⁵⁶⁾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배당소득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이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에 형평성이 심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에 이른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로서 배당소득금액이 미소한 금액에 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중과세가 배제된다. 극단적인 예로서 배당소득이 3천9백만원인 자는 배당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반면, 배당소득이 1백만원이고 이자소득이 4천만원인 자는 배당소득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고자 한다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각각에 대해 종합과세를 위한 최소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이라면 종합과세하도록 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른 소득의 금액과 해당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을 합산하여 볼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도록 하는 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달리 정의하자면 일정금액 이하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이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그 소득을 거두는 자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모두 종합과세하자는 것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는 금융소득금액만 보지 말고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볼 때 추가합산되는 금융소득의 최종 한계세율이 14%를 초과하는 경우, 즉 1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되고 최근에 납세자번호제도가 도입된 독일의 경우 선택종합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납세자번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징세여건이 열악한데도 이미 1972년에 이자소득의 종합과세와 원천분리과세의 선택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16년간 운영한 바 있다.

56) ① 금융소득 5천만원이며 근로소득 5천만원인 자와 ② 금융소득 3천만원이며 근로소득 7천만원인 자의 실질적인 담세력은 동일하다. 두 경우 모두 인적 공제 등 소득공제가 2천만원인 경우를 상정한다. ‘①’의 경우 산출세액은 10.52백만원($5.6 + 4.92$) 10.42백만원($7 + 3.42$) 중 큰 금액인 10.52백만원이 된다. ‘②’의 경우 10.98백만원($4.2 + 6.78$)이 된다.

이와 같이 할 경우 과세표준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거의 모두 해당되게 될 것이므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다. 현행의 4천만원 기준에 의할 때 합산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은 24% 내지 35% 였다. 현행보다 금융소득과세의 폭을 과도하게 넓히는 것은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저해하는 한편 큰 세수를 올리지 못할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전환에서 기준이 되는 세율을 15%로 하는 것 보다는 24%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4%로 하더라도 미소한 금융소득에도 종합합산하여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금융소득금액(예, 연간 5백만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기준의 설정상 물가상승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여부의 판단에 다른 종류의 소득금액을 고려하게 할 경우 행정 및 금융시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제도 변경은 상황을 보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객관적 순소득과세원칙 확대 여부

현행 세제는 실질적 담세력을 반영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보면 불완전한 것이다.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자본비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론상 객관적 순소득금액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포괄적 소득과세를 지향하는 미국이나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 북구 및 독일의 예와 같이 금융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고 자본손실의 통산범위를 자본소득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 발생한 비용에 관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독일에서와 같이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금융비용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소득과세상 납세자의 신고성실도와 행정적인 집행가능성과 같은 조세행정여건을 보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12년이 되어 가고 있다.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실물소득보다는 금융소득이 세수조달창구로서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실물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상 달리할 점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여러 이론과 제도가 있다.

2012년 우리는 금융소득과세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우리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의 도출이 될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범주의 설정은 실질적 형평의 제고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과거 부부단위 합산으로 종합과세의 인적 범주를 설정하던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낮추려 한다면 단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천만원으로 낮춘다면 종합과세대상 납세자는 소폭 증가하면서 적지 않은 세수증가가 기대된다. 조금 길게는 종합과세의 물적 범주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도 소득과세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소득은 인적 귀속을 가리기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mobile income*이라고 한다. 이런 특성을 중시하는 것이 최근 주요 국가들의 제도적 움직임이다. 우리의 형편상 그와 같은 움직임과 다소 다른 방향으로 가려한다면 그 지향성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질적 형평의 관점에서 현행 금융소득과세제도가 가지는 문제를 차분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비교과세제도로 금융소득을 다른 종류의 소득에 비해 중과하는 점, 금융소득의 규모만으로 종합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점 및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본손익의 통산범위를 제한하는 점은 수평적 형평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낮은 금융소득자들에게 분리과세만 인정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배당세액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자소득의 규모를 고려하는 것은 조세의 중립성을 저해한다. 이런 점들에 대한 제도개선은 우리의 납세의식 및 행정여건을 보아가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미 상당수준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소득세제를 완전히 포괄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인 이원적 소득세제로 갈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은 제시하지 못하고 비교적 미시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데 그친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국중호 · 한상국, 2006, “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 세무학연구, 제23권 제3호.
- 김선구 · 박성배, 2007, “세제전문가의 금융소득세제 공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8권 제2호.
- 오 윤 · 박 훈 · 최원석, 2006, “금융소득 및 자본소득 세제 개편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7권 제3호.
- Atkinson, A.B. 2003, “Income inequality in OECD countries : data and explanation”, *CESifo Working Paper*, No.881.
- Auerbach, A. and J. Slemro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ax Reform Act of 1986,”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June 1997.
- Bird, Richard M. and Zolt, Eric M., “Dual Income Taxation and Developing Countries” (May 27, 2010). *Columbia Journal of Tax Law*, Vol. 1.
- Christoph Spengel & Wolfgang Wiegard, Dual Income Tax : A Pragmatic Tax Reform Alternative for Germany, *CESifo DICE Report* 3/2004.
- Gerhard Wagenhals, 2011, Dual Income Tax Reform in Germany. A Microsimulation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Microsimulation*, 4(2) 3－13.
- Klaus Tipke & Joachim Lang, 2005, *Steuerrecht*, Verlag Dr. Otto Schmidt Köln.
- OECD, 2006, *Fundamental Reform of Personal Income Tax*.
- Wolfgang Kessler and Rolf Eicke, 2007.8, Welcome to the German Dual Income Tax, *Tax Notes Int'l*.
- 金子宏, “租税法における所得概念の構成(二)”, 法學協會雜誌 85卷 9号 36頁.
- 金子宏, 2008, 『租税法』, 弘文堂.
- 石弘光, 1993, 『利子・株式譲渡益課税論』, 日本經濟新聞社.
- 牛米努, 2007, “明治20 年所得税法導入の歴史的考察”, 『税大論叢』 56号.
- 大藏省財政史室, 1977, “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和まで ; General Headquarters, Report on Japanese Taxation by Shoup Missio,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Tokyo(1949)”.

A Study on the Global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Yoon Oh* · Dong-Won Lim**

〈Abstract〉

In the year 2001, the Global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was implemented in earnest and is being applying for twelve years. As the capital is accumulating, the financial income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the object income for the raising source of taxation. There are many theories and system about how to tax on the object income and the financial income. Currently, we have formed a social consensus about the need to seek an appropriate system for us, considering a specialty of Financial Income taxation. The matter will draw a agreement about what most appropriate system is.

The setting range of the Global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is to improve a substantive equality. If it is lowering a threshold amount of the Global taxation has increased relatively as compared with that time setting range for couples jointly, it is desirable to phase in. If it is lowering a threshold amount by thirty million won, the taxpayers of the Global taxation increases slightly and the tax revenue increases considerably. Furthermore, the material range of the Global taxation have to expand. In addition, a taxable income have to include a capital gain of minority shareholder who has listed stock.

Financial income is called 'mobile income' because it's hard to identify the personal attribution. In recent years, World's leading countries set a high value on these characteristics. If we were to go toward a different trend according to convenience, we have a need to sharpen the directivity. From the substantive equality of view, the current Global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is tried to improve. One is levied a heavy tax on financial income by Comparative taxation, another is judged whether it is the Global taxation by a scale of financial income, the other isn't allowed necessary expenses and so on are opposed to the horizontal equity. It is opposed to the vertical equity that the low financial income earners is granted the Separate taxation only. And it is impeded to the neutrality of tax that is judged whether it is the dividend tax allowances considering scale of interest income. The improving the system with respect to these things is necessary that improvement consider social consciousness and administrative conditions.

〈Key words〉 Financial Income, Global Taxation, Dual Income Taxation, Equality on taxation

* Professor, School of Law, Hanyang University, First Author

** Doctoral student, College of Law, Hanyang University, Co-Author